

건축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 5922호

제 3 조 중 `1 급국도 및 2 급국도`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로 한다.

제 9 조 제 1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의 기확보된 전술지역에서 건설할 때와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 및 병영시설이 군사 기밀에 속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5조의 2(전화국선의 인입배관의 설치 등)

- (1)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전화설치 장소까지 전화국선이 인입되도록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 배선 및 단자함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 부령으로 정한다.

제 10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지하층의 주요 구조부는 제83조에 규정한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300평방미터 이상일 때에는 지하층으로부터 외부로 연결하는 직통피난 계단을 1 개소 이상, 5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2 개소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고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 10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06조의 2(지하층의 표지)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규격의 표지판을 당해 건축물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그 출입구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 내용 및 색채 등에 관하여는 건설부령으로 한다.

제 1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18조의 2(자연환경 보전지구 안의 건축제한)

도시계획법 제 18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환경 보전지구(이하 `환경보전지구`라 한다.) 안에서 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에 한한다.

1. 기존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증축은 주택에 한하며 증축면적은 33제곱 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환경 보전 지구안의 주민을 위한 교육, 학예, 체육용, 의료용, 보안용의 건축물의 건축
3. 환경보전지구 안에 거주하는 자가 영위하는 농림, 수산업 등 환경 보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관리용 건축물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4. 토지수용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그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5. 화약류, 유류, 석탄의 저장 시설등 그 용도상 환경 보전지구 안에 두어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건축
6. 환경 보전지구의 지정 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아(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행하는 건축물의 건축

제 12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20조의 2(인접 대지의 경계선과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

- (1)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의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인접대지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에 진북방향은 8미터 기타 방향은 17미터를 더한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 (2) 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인동간의 간격의 2분의 1이 되는 지점에 대지 경계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제 125조의 규정은 제 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규정)이 영 시행당시 이미 지하층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층의 면적의 합계가 2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 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71년 12월 31일 공포